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이 규 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I. 머리말

지역경제는 개별적인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유통,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다. 시도, 시·군·구 등의 단위지역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각각 지역경제단위가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는 지방 주민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줄이고 주민활동을 지속시키는 원천인 동시에 주민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경제가 활발할 때 그 지방주민의 생활은 여유있게 되고, 주민활동이 활발할 때 그 지방의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고도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지역경제는 국가보다 지역자치단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되어, 그 지역

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재정적 및 시설적 재원이 증대되면 지역산업의 착근과 발전은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또한 건실한 자치권과 재정력을 가진 지방자치체가 실시될 때 인력과 정보 및 기술이 그 지역에 올바르게 유입되고 활용되며 축적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안질서, 사회안정, 청소 등의 서비스와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로부터 혜택을 받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세 및 사용료와 같은 공과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가계로부터의 노동력과 생산자로부터의 재화와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지역경제는 지방의 공

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이자를 받기도 하며,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서비스, 인력, 재화, 구매력 등이 거래되는 상호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지역주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기반을 강화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단체는 다같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며, 주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보장 및 지방단위의 지역개발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전개된다는 사실에서 깊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주체와 목적에서 공통점을 매개로 하여 이들 양자는 깊은 상호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게 되는 지역경제는 그의 성장과실 가운데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공공투자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향상된 투자능력은 지역경제부문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투입되어 지역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에 직접 이바지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된 지역경제는 또다시 지방재정을 풍요롭게 하여 지방행정을 더욱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이 순기능적으로 나타날 때 이는 지방자치제의 확고한 정착과 건전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제의 요소 가운데 지역경제의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으로서 지역경제는 재정적 수입의 원천인 동시에 재정적 지출의 귀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의 권한위임이나 재원지원하에 복지와 소비부문 활동을 주로 담당하던 역할분담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생산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가적 역할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환경을 창출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 하겠다.

물론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중앙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미흡하였던 것이다. 지역경제의 낙후 및 지역간 경제력 격차 등은 도로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관련 행정기능의 미흡, 기능인력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데 반해 중앙정부의 대응은 금융·세제지원 위주의 부분적 대응에 그쳤으며, 기존의 육성정책들의 성격은 지방중소기업들에 대한 단순한 지원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금융 세제상의 지원정책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간

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시·도 경제통상국장회의에서 다루어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地域經濟活性化 5대 施策

### 1. 지방재정의 경제활성화 촉진기능 강화

지방예산을 지역SOC 등 생산적 분야에 상반기중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상적 경비,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감축하여 절감된 재원을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입토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자치단체 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투입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약 20조를 지방SOC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투자하고 상반기에 8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조기집행·관리를 위해 설계→착공→대금지급→고용창출효과를 점검·관리하는 추진상황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5조3천억원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집중투입하도록 하였다. 즉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재래시장현대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소규모 지방SOC사업,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10만명 이상 지역단위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건설경기회복 등 지방재정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 2)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

경상적 예산은 예산의 구조조정차원에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행사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한 축소 및 폐지토록 하고 있다. 행사성·전시성 예산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운영상황 측정을 통해 우수단체 시상 및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특히 예산절감 동기부여를 위한 예산성과금 제도와 적극적 연계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절감된 경상적 예산은 예산전용,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지역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 3)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운영

한정된 투자사업비의 분산으로 투자효율

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안배등 소규모 분산투자를 억제토록 하고 있다.

투자사업의 경우 지역경쟁력 제고 기여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선택과 집중방식을 적용하고, 국가지원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자체개발사업은 면밀히 검토후 추진하는 등 지역경쟁력 강화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적 투자를 하도록 한다.

## 2.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조성

고비용·저효율의 우리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행정을 과감히 혁파하고, IT·BT 등 지역전략 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자발적 성장발전토대를 마련하여 기업의 투자의욕과 생산활동에 활력을 고양하고자 한다.

### 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관행·규제의 혁파

#### 1) 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완화

기업과 관련, 일선기관에서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에 의존하는 모든 행사를 금지시키는 등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비자발적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금지하고, 조례제·개정 및 금고 등 선정시 성금·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 신설을 금지하며, 불법적인 기부금품모집행위의 집중단속을 강화토록 한다. 즉, 각종 개발사업 등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

금품 등 요구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2)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여 근절

현행 민원처리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최소화하고, 다른 부서의 협의·경유·추천 등이 필요한 경우 일괄 합동처리하는 one stop services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서류를 접수, 종결할 때까지 책임처리하는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발생등을 이유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여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된 인·허가는 즉시처리할 뿐만 아니라 마을조경, 도로 개설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인·허가시 부담지우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다.

#### 3) 기업활동에 지장이 되는 규제 발굴·개선

인·허가 관련법령, 자치단체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거나 절차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외국인 기업, 중소기업조합 등 지역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며, 법령 등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분기 1회 별도서식에 의해 보고하고 자치법규 사항은 즉시 자체 해결토록 한다.

또한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 허가, 환경지도 등 지역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지방에 이양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년 2회 집중발굴기간을 설정하여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무는 지방이양실무부서에 통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심의 요청토록 한다.

#### 나.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 1) IT·BT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기반 강화

벤처타운 생물자원연구센터, 바이오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전략산업의 창업기반시설을 42개소, 4,224억원을 지원하여 확충토록 한다.

생물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기능 활성화등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원토록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을 간접 지원하고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토록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17개소 건립하는데 지원하며, 운영내실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배치, 장비보강, 국제기술교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

##### 2) 유망 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시설등 기반시설의 확충, 공동이용장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우선지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창업보육, 벤처투자펀드, 지역정보화 등 벤처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벤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벤처창업동아리 및 연구소의 우수창업아이템을 평가지원하고, 지역벤처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하여 운영 내실화 등을 강구토록 한다.

#### 다. 지방산업인프라 확충

##### 1) 지방공단의 기업유치 기반조성

고속도로 주변지역 등 수도권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공단기발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결도로개설, 용수확보, 급매수관, LNG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한다.

또한 지역산업체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성, 생산제품 및 가격정보 DB,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토록 한다.

##### 2)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 강화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 품종개발 및 양육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과, 배, 감귤 등 지역대표 1차산업의 구조조정 및 진흥사업을 지원토록 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패류 양식단지, 종묘배양단지, 전통공예단지 조성 등에 지원하여, 실제 지방산업 인프라 확충산업에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라. 외자 및 민간유치 촉진시책 강화

##### 1)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민·외자 유치 촉진

기업입지 기발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임대공단조성, 기존 산업단지 저가분양 등 입지조건을 개선토록 하였다. 2000년 10월 공유지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무상대여, 저가임대 등 기업유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지제도 개선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무상임대 및 대부료 감면과 수도권 기업 지방유치에 따른 지원책으로 영구축조물 허용, 매각수의계약, 장기대부(5년→20년), 대부료 산정을 인하(5%→1% 계획), 매각대금 장기분납(5→20년) 등이다.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방안으로 민간투자촉진 조례 제정 및 정비보완, 외국인 투자 및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규의 지속적 개선 등이다.

또한 투자유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네트구축을 위하여 투자환경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한 전용인터넷 홈페이지 구성과 잠재적 해외투자가 및 관심기업체 ID수집 DB화 추진 등이다.

### 2)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관리체계 확립

투자상담에서 사업완료시까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입지정보 제공, 투자신고,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주고, 투자유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기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교, 우체국, 편의점 설치 등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한다.

### 3)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사무관리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사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도심철도, 간선도로, 환경기초시설 등 지역 SOC사업 유치를 위한 유치조건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과 연계된 프로젝트 개발 유치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외자유치 중에 있는 사업의 차질없는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투자상황 분석, 투자가 애로사항의 적극적 수렴으로 해소방안을 모색하며, 투자동기 면밀 분석, 상담전담공무원 배치, 홍보대책,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 유치계획의 성공적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마. 지역산품 수출진흥시책 추진

### 1) 지역의 수출역량 제고

수출기업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출능력이 부족한 우수상품 제조업체를 선발하여 1년간 무역실무부터 해외마케팅까지 400여개사에 대하여 지원하며, 수출보험료 및 유명상품 규격인증 획득지원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해외정보습득이 어려워 중소기업에 전세계 주요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전문인력확보가 어려운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 계약서 작성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계획하고 있다.

### 2) 민·관합동의 총력추진체제 구축

자치단체 무역협회, 지원기관(KOTRA 등),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무역진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기적으로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통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또한 해외현지무역관, 주재국 한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로 현지정보 입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 3)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통상활동의 내실화

노력과 예산투입에 비해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국내외의 지적이 있으므로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무역관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사전 정보 분석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뚜렷한 쟁점 또는 협상대상이 없음에도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는 등 전시성행사를 지양토록 하고 있다.

통상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통상활동을 분석·문제점 도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통상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외국 자치단체와의 경제통상협정을 추진하며, 통상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통상홍보 전략등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동일지역 중복진출, 낭비요인 방지를 위한 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도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중복 진출,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분기별로 심의조정을

받아 해외 개척단 등을 파견하고 있다.

## 바. 유망중소기업육성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 1)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의 추진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조속히 지급함으로써 자금사정과 채산성 악화로 겪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4조 960억원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조기 지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특히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대출심사 조속진행 등으로 필요자금을 적기지급토록 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금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2000년 21,996업체, 8,087억원이던 보증계획을 2001년에는 29,974업체, 1조 49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미설립된 지역은 조속히 설치하여 지역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남북, 제주), 기 설치된 지역은 재단기본재산 확충을 지원하고 보증운영배수(2000년: 1.5배)를 최대한 확대지도(중앙신용보증의 경우 보증운영배수는 10.5배임)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조기구매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총구매 계획 15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13조원을 투입하고, 상반기중에 70% 이상을 조기구매하여 중소기업체 가동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 2) 중소기업활동 지원체계 강화

지역우수상품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24개소를

건립 확대하고, 중소기업대표 홈페이지를 각 시도별로 구성하여 지원토록하고 있다.

금융애로사항의 적극적 발굴 및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금융지원 협의회 운영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시책, 입지, 자금, 기술, 인력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나 신상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은행을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 3. 지방건설업 활성화 대책 추진

고용촉진, 내수진작 등 지역경기에 파급효과가 큰 지방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방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

##### 1)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 축소시기의 연장

국가발주공사에 대한 금년부터 시행예정 이던 지역의무 공동도급금액 축소시기를 금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2)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총계약금액기준 40% 이상 되도록 억제화함으로써 연간 4,800억원 정도 지역

업체 수주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현행대로 계속 존치(공사 금액 234억원미만, 시·군·구는 무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 3)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개선

지역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는 한도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지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토록 하였다. 즉 현행 「추정금액 5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추정가격 50억원이하」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제한 입찰금액을 종전보다 20%상향하는 효과를 거양하여 연간 3,000억원 정도의 수주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 4)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의 활성화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대책 차원에서 하도급직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직접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건설업 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74조 등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근거를 활용하며, 원도급, 하도급자간의 합의를 유도,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토록 지도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후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때 전차분 기성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지급하도록 지도하며,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금액에 비해 82% 미만인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심사하도록 권장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 5) 선급금 지급 강화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즉시 50~70%까지 선급금을 지급토록 한다.

## 나. 지역개발사업의 확대 및 조기집행

1)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조기 착공 지원  
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총 3조4,473억원을 투입하여 1,778km를 정비하며, 이는 작년대비 27.9% 증가된 규모이다. 즉 도심지 교통난 해소사업에 141km, 14,271억원,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1,372km, 10,854억원, 교통소통대책사업 등에 265km, 9,350억원의 투입될 계획이다.

## 2) 월드컵 대비 국토공원화 사업

도로별 소공원 조성, 생활주변공간 녹화, 하천주변 환경정비 등 총 833억원을 투입하여 1,713개소를 정비하여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3) 소도읍 개발사업

금년말까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개 소도읍 당 98억원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총 609억원(교부세 220억원)을 투입하여, 67개 시·군·구의 지방소도읍을 정비할 계획이다.

## 4)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6,563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작년대비 243% 증가된 규모이다. 특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주택개량 8,500동, 마을정비 270마을, 빈집정비 8,300동 등 총 2,563억원이 투입될 계획

이다.

도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4,0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00개 지구에 상하수도 및 소방도로 개설 등 달동네 생활기반시설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즉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고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 투자하고, 금년부터 2003년까지 1조 6,000억원을 투자하여 400개 도시달동네 지역의 기반시설을 완전 정비토록 하고 있다.

## 4.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기반 강화

특화 전문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 등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며, 지역특산물 유통촉진기반 구축으로 생산자 및 도시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기반 강화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특화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

## 1)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3개년 계획의 수립추진

금산의 인삼시장, 대구 약령시장의 경우와 같이 대형점과 차별화된 지역별 전문 특화시장의 기반시설확충을 지원하여 주차장확보, 화장실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공동물류창고, 아치설치 등 필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화 대상 재래시장의 기능활성화 방

안을 수립하여 단일 품종 집중화등 전문·특화시장으로의 육성하고, 시장자치조직활성화, 카드결제시스템도입등 경영현대화를 도모하며, 4계절 지역특산물과 재래시장의 직거래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으로 공동구매, 할인판매시스템 구축하고, 사라져가는 전통산품코너 개설, 품물거리 조성 등으로 지역대표관광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로 시장과의 친근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 2)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시장상인,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사업추진지원단을 설립하고 필요시 재래시장경영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재래시장구조혁신 추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나. 지역특산물 유통촉진

##### 1) 인터넷 「내고향 특산물 마당」 설치 운영

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특산물 홍보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 물론 1999년 4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특산물코너가 개설된 이래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운영이 부실하지만, 미설치된 자치단체는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하고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전담직원 지정 및 데이터 정비등 「내고향 특

산물마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내고향 특산물 마당」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대책으로 행정자치부내에 내고향 특산물 마당 운영지원팀을 구성, 중앙집합 교육 및 현장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소 전문가 및 재정경제과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기별로 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해주고 있다.

##### 2)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이동식 직거래 장터에 천막·판매대 등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도심유휴지, 소비자 밀집지역 안내 및 장소 임대 협조지원 등 지역거점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지원하도록 한다.

자매도시 판촉기획행사 개최 지원등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촉진한다.

이동식 직거래장터 운영을 강화한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움직이는 그린마켓」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 3) 산지 직거래 기반구축

산지의 농산물 직판장, 포장센터 설치를 확대하며, 대형유통업체와의 산지직거래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 5. 지역경제의 튼튼한 안정기반 구축

산업평화, 실업대책 및 물가안정없이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역단위 노사안정책임제를 확립하고, 금년 소비자 물가는 3%선 유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튼튼한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토록 한다.

### 가.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 증진

#### 1) 참여·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노사정 한마음갯기대회, 근로자한마음갯기대회, 노동상담활동 지원 등 「노사한가족」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노사화합 우수기관선정 표창 및 언론홍보 등 산업평화 대상제를 실시하여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 나.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추진

#### 1)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시행 취로 인원 23만명을 위해 예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인 재원은 국비 4,000억원과 지방비 2,000억원으로 되어 있다. 즉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국비 2,000억원을 투입하고,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국비·지방비 각 2,000억원 등 4,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2) 사업추진방향

대상자 선발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령, 재산상황, 실업기간, 가구소득, 자격심사 등 선발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한다.

산업정보화, 지역주민숙원 및 국토공원화 사업에 역점을 두어 공익성·생산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며,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근로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 3) 사업추진방법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균형되게 추진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1/4분기에 집중적으로 근로배치하며, 단계별 사업추진기간은 3개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7:3이 유지되도록 운영하며, 자치단체별 근로사업예산의 30%, 단위사업별 50%까지 자재비, 장비, 임차료 등에 집행하고 있다.

### 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 1)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책임과 역할 강화

2001년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별 물가관리 실적평가를 정례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업소별로 물가를 비교하여 공표하고, 시민자율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 2) 물가취약시기 물가대책 추진

설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으로 농축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26개품목을 중점관리하고, 경찰, 세무, 소비자단체

등과 현장점검을 강화하는등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석 대비, 하계휴가철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매점매석, 바가지요금, 자릿세 등 고질적 행태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3)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연간 분산 조정토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Ⅲ. 地域經濟 活性化 支援對策

이상의 지역경제활성화 5대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시도별 지역경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즉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처 및 행정자치부로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역경제대책 종합상황실」

을 설치·운영하는 등 경제비상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역경제동향관리 및 정보교환체계의 확립이다.

매월 1회 시도단위의 지역경제 전반의 상황과 경제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년 2회 지역경제동향 담당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경제현안과제를 보고 및 토의하며 지역경제동향관리, 분석기법 연찬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지원을 한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상황과 현지 평가 및 대책 등을 년 2회 평가하며,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시책사업비를 지원토록 한다.

또한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장관간담회 의시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관련 중앙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반영을 지원토록 한다.

넷째, 기업규제개선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단을 구성·운영한다.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방중소기업, 공장, 외자민자유치 등에 따른 규제 및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자체개선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단체, 지역투자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토록 한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 농지전용, 토지형질 변경 등 지역경제 개발관련 중앙권한중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 1. 행정지원체제 강화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와 역할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이나 국가종합계획의 단계에서는 경제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수립·추진되었지만 이제는 지역단위의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2)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개발의 추구가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지역의 경제여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부존자원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흡수하여 축적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두어야 한다.

(3) 인력의 개발과 시장의 개척이다. 지방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개별적으로 충분하나 인력과 시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는 정부차원에서 개발하고 확대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력은 학교와 훈련기관에서 양성하고, 충분한 수요성을 가진 시장이 확보될 수 있

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은 밀접하므로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과실이 지방재정수입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이다.

(5) 지역경제로 하여금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다. 각종 행정규제와 제약으로 지방을 떠나 선물이나 대도시로 이전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축적된 자본은 그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은 여건조성과 지원강화 그리고 효과수렴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산업의 개발내지 수용을 위한 적정 입지를 계획하고 산업의 발전과 지방정책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지방경제인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경제활동의 제약과 간섭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근거도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적된 자본은 그 지역안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지원강화방안으로는 재정적 지원과

접근성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을 그 지방의 기업을 주대상으로 하여 물품조달도 가능한 한 지역내 상품을 우선 구입하며, 금융대출 또한 지방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접근성 강화는 교통·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대하여 원료 및 시장과의 시간거리를 단축하고 정보취득의 신속화를 도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생활환경개선은 주택·교육·의료·시설·문화·복지시설·휴식 및 위락공간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 수준도 제고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있어 대도시와 비교하여 큰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주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3) 효과수렴을 위해서는 지방의 경제적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효과를 다른 지역, 특히 대도시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방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운료는 그 지방의 자연자원에서 공급케 하고 고용기회는 지역주민에게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재화와 용역의 활용도 당해지역의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즉, 화폐의 타지역 유출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당해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향민에게 고향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애향운동을 전개하여 그 지방의 경제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건조성은 공장이나 기업 등의 경제단위가 그 지방에 입지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지원강화는 지방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게 되며, 효과수렴을 지역경제 전체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산업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지역경제 전체를 독자적 위치에서 발전케 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 2. 행정적 지원수단으로서의 규제완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수단의 개선은 통체적 수단위주에서 조정·지원적 수단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업의 시작은 각종 규제완화이다. 물론 지역경제분야에서의 규제가 지역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재정관계규제는 경제질서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력관계규제는 미성년자의 보호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토지 및 시설관계규제는 개발에 따른 혼란을 줄여준다. 또한 기술 및 관리관계규제는 산업정보통신망의 구축을 가능케 하며, 노사관계규제는 산업평화를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밖에 운영관계규제나 마케팅관계규제들은 관련 산업간의 협조노력과 발전에 공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각 분야의 생산활동을 제약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의 실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

의 과도한 규제제도는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제도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지역경제진흥을 위해서 통제적 정책수단을 지원적·조정적 성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가 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력분야에서는 직업안내·상담에 대한 정보나 권고를 행하고 노동시장 정책이나 교육을 통해 시장기회 및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토지 및 시설관계분야에서는 재산 「인벤토리」에 대한 권고를 행하고 효율적인 공간정책을 통해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술 및 관리분야에서는 기술이전 및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나 권고활동과 연구개발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노사관계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사위원회 등에 재량적으로 관여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계분야에서는 신경영기법의 개발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영내실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영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원자재 지원,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역내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 일반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⑥ 마케팅 분야에서는 지방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수입

대체, 수출촉진을 자극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구매 및 판촉활동지원이 지방기업의 판매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⑦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지방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이나 발전수준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와 계획을 갖고 활용해야지 제도화한다고 곧장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대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제반 정책수단을 이용가능하도록 관련분야의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 IV. 맺는 말

지방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지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여금 지원이나 산업도로의 개설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규제의 철폐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에 SOC시설투자를 하거나 지역특화산업을 개발·지원할 경우에는 투자의 기여도 등 생산유발효과 및 산업연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개발과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내 부존자원의 발굴과 지방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지방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고 그것이 어느수준의 자생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 토착화될 때까지 보호·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써 도로·통신·교통·전기·에너지·상하수도·주택 등의 생산 및 생활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확보와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바 생산 및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와 노동력을 확보 내지 양성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 내지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개발 및 활용을 적극화하고, 시장의 개척 및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수단의 개선을 통제적 수단 위주에서 조정·지원적 수단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업의 출발은 규제완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이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이나 발전수준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선택하고 의지를 갖고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력의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재정의 원천

이 되는 지역경제를 개발하고 그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바로 지역경제가 지방주민의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주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보장 및 지방단위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발전하게 되는 지역경제는 그의 성장과실 가운데 일부를 지방정부의 재정력 강화에 할애함으로써 공공투자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이렇게 향상된 투자능력은 지역경제부분이 요구하는 지역SOC를 확충하는데 투입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직접 기여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된 지역경제는 지방재정력을 제고하는데 더욱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수근,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지방재정」 제16권2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7)
- 김광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지방재정」 제16권2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7)
- 박희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0)  
 \_\_\_\_\_,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지방재정」, 제16권 2  
 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7)  
 최재선, 「지역경제론」(서울: 법문사, 1985)  
 홍기용,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접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전략」, (한  
 국지역개발학회·한국지역학회 세미  
 나, 1991)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지침」,  
 (행정자치부 시·도경제통상국장회  
 의 자료, 2001)

### 시사용어 해설

#### ◆보석(保釋 Release on Bail)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도주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이를 몰수할 것을 전제로 법원이 구속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청구에 의한 보석),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직권에 의한 보석). 보증금액은 범죄의 정상 성질 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함에 충분한 액수를 정하고, 이를 납부할 사람은 제3자라도 무방하며 또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있다. 보석을 허락할 때는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